

『전자의료기기산업 거점 활성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 구축사업의 후속으로 조성된 구미 첨단의료기술타워(G타워)를 중심으로 전자의료기기 산업 생태계 조성과 G타워의 조기정착 지원 필요
- 관내기업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외 기업유치를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의료산업 활성화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출연개요
 - 출연기관 :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 출연예정액 : 금500,000천원(도비200,000, 시비 300,000)
- ※ 2차년도 지방비 소요금액

○ 주요사업

- 사업명 : 전자의료기기산업 거점활성화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9. 6. ~ 2021. 12.(2년7개월)
- 위치 : 구미시 산호대로 253(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
- 총사업비 : 13.3억원(도비 4.9 시비 8.4)
-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재원	계	'19년	'20년	'21년
총계	총 계	1,334	450	384	500
	도 비	494	150	144	200
	시 비	840	300	240	300
기업유치 지원	소 계	636	136	230	270
	도 비	-	-	-	-
	시 비	636	136	230	270
인프라 지원	소 계	313	173	60	80
	도 비	139	39	50	50
	시 비	174	134	10	30
사업화 지원	소 계	385	141	94	150
	도 비	355	111	94	150
	시 비	30	30	-	-

- 사업주체 : 경상북도, 구미시
- 주관기관 :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 사업내용
 - 기업유치 지원 : 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 입주기업 임대료 감면 지원
 - 인프라 지원 : 분석장비 및 클린룸 등 시설 사용 지원
 - 사업화 지원 : 인증지원, 마케팅 및 인력양성(인큐베이팅 지원)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10. 11. : 예비타당성 심사 및 국책사업 확정(B/C1.02)

- '15. 5. : 예정부지 변경(舊 대우전자부지 → 공단운동장 부지)
- '15. 7. : 공단운동장 내 건축예정부지 매입(7.273m²)
- '16. 9. : 건축 실시설계 완료
- '17. 2. :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 승인
- '17. 5. : 건축 착공(※ 기공식 6. 7)
- '19. 7. : 건축 준공
- '19. 10. : 입주기업대상 의료산업 분석 등 정보제공
- '19. 11. : 신산업 발굴 및 기획지원(5개사, 5개과제)
- '19. 12. : G타워 입주기업 협의체 구성
- '19. 12. : 기업유치 및 인프라조성을 위한 홍보자료 제작·홍보
- '20. 6. :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서부지사·기업은행 유치
- '20. 9. : 입주기업 협의회 개최

※ 현재 21개 社, 45.41% 입주율 달성

- '20. 11. : 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G타워) 준공식 개최
- '21. 6. : 기업유치(40개사, 입주율 85%)를 통한 정상화
- '21. 6. : G타워 기반 의료기기제품 전시회 개최
- '21. 12. : 한국/미국 식약처 인증지원 및 인허가 지원
- '21. 12. : 국내외 전문가를 통한 기술지도·컨설팅 지원
- '21. 12. : GMP 및 품질관리자 교육, 지역 전문가 양성

○ 출연의 필요성

- 전자의료기기산업은 기술개발과 인허가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나 인구 고령화, 웰빙문화 확산 등에 따라 미래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음

- 의료기기산업 성장률은 높지만 수도권과 격차가 높고 고부가가치 제품이 부족하며, 인근지역 의료지구 특성화에 따른 기업유치 경쟁 구도로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없이 기업유치에 난항 예상
- 최근 구미지역의 대기업이전 및 지역경제 둔화에 따른 신산업 육성·투자 활성화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술력을 보유한 핵심기업의 유치를 통한 동반성장이 절실한 상황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예산조치 : 2021년도 예산편성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전자의료기기산업 거점 활성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은,
 - 국내·외 의료기기 업체 및 연구소 유치와 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신성장동력산업인 전자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전자의료기기산업은 인구 고령화와 웰빙문화 확산으로 미래 성장잠재력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매년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의료기기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을 고려해볼 때 전자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